

삼성 중기채권투자신탁 제 2-1 호

이 투자설명서는 삼성 중기채권투자신탁 제2-1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중기채권투자신탁 제2-1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탁 명 : 삼성 중기채권투자신탁 제2-1호
2. 투자신탁의 종류 : 개방형, 추가형, 채권형
3. 자산운용회사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명

| | |
|---------|-----------|
| 판매회사 | 전화번호 |
| (주)하나은행 | 1588-1111 |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0년 1월 25일
6.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 | |
|----------------|--|
| 비치·공시장소 | 인터넷 게시주소 |
| (주)하나은행 | www.hanabank.co.kr |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본점 | www.samsungfund.com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2. 신탁계약기간
3. 종류
4. 자산운용회사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6. 수탁고 추이
7. 해지사유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2. 주요 투자전략
3. 주요 투자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5. 투자실적
 -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 나. 연평균 수익률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입
2. 환매
3.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2. 투자위험
3. 투자대상
4. 투자제한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업무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4. 운용자산 규모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2. 주요 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2. 잔여재산분배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4. 손해배상책임
5. 재판관할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2. 수시공시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삼성 중기 채권투자신탁 제2-1호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종류 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삼성투자신탁운용(주)
- 5. 최초설정일 등 2004년 09월 13일
연혁

6. 수탁고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 현재 (’06.09.30) | 6개월전 (’05.03.31) | 1년전 (’05.09.30) | 1년6개월전 (’05.03.31) | 2년전 (’04.09.30) |
|--------|-------------------|---------------------|--------------------|-----------------------|--------------------|
| 수탁고금액 | 17 | 35 | 252 | 2,148 | 138 |
| 수탁고증가율 | -49.85 | -86.25 | -88.28 | 1,450.62 | - |

* 수탁고 증가율은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임.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거나 투자신탁재산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채권,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금리스왑거래 등을 통해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의 적극적인 획득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국공채 및 신용등급이 A-이상인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차익의 적극적인 획득을 추구하는 것을 투자전략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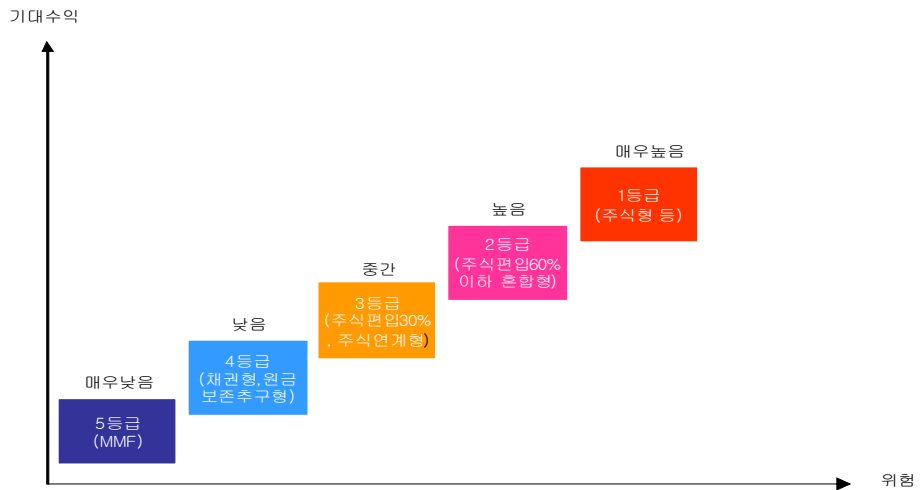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투자위험'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유동성위험 / 파생상품투자위험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기타위험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5등급중 4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의 투자를 통하여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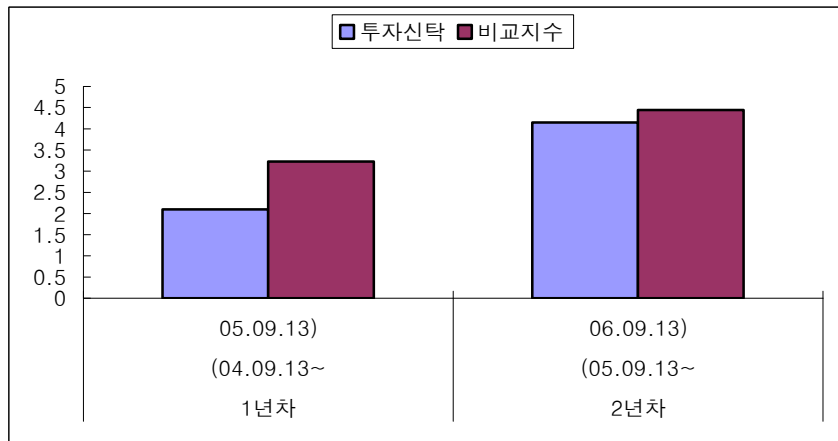


5. 투자실적 추이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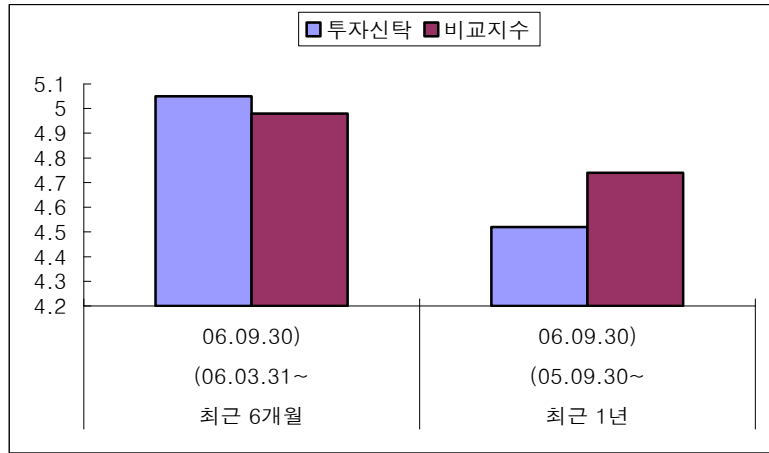
| 구분 | 1년차 (04.09.13~ 05.09.13) | 2년차 (05.09.13~ 06.09.13) | 3년차 | 4년차 |
|------|--------------------------------|--------------------------------|-----|-----|
| 투자신탁 | 2.1 | 4.15 | - | - |
| 비교지수 | 3.23 | 4.44 | - | - |

*비교지수:[KOSPI120]*1.000



나. 연평균 수익률 추이

| 기간 | 최근 6개월 (06.03.31~ 06.09.30) | 최근 1년 (05.09.30~ 06.09.30)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투자신탁 | 5.05 | 4.52 | - | - |
| 비교지수 | 4.98 | 4.74 | - | - |



Ⅲ.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연간, %) | 지급시기 |
|-------------|---------------------|------|
| 선취/취취 판매수수료 | - | |
| 환매수수료 | 6개월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 환매시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자산운용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15% |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 3월 |
| 판매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35% | |
| 수탁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3% |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 | |
| 기타비용 ¹⁾ | 순자산총액의 연 0.03% | 사유 발생시 지출 |
| 총 보수·비용비율 | 순자산총액의 연 0.56% | |

註)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5년09월18일~ 2006년09월17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 투자기간 | 1년차 | 3년차 | 5년차 | 10년차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 56,000 | 176,540 | 309,435 | 704,362 |

註)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이익금의 재투자 여부,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및 투자증권의 매매차익 등을 원천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제상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일, 투자신탁재산에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에 특례를 적용하여 매월 각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익익월에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가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이익분배금 지급일, 환매일에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에 대한 과세율>

- (1) 개인투자자의 경우 : 소득의 15.4%(주민세 포함)
- (2) 일반 법인의 경우 : 14% (비과세 법인의 경우 없음)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및 이익의 분배

- 1. 매입**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영업점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입가격 및 매입방법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 공고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매입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
|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 자금납입일 |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 |
|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 자금납입일 | | 기준가격적용일 수익증권 교부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2.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투자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에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환매기준가격으로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합니다.

| | (제1영업일) | (제2영업일) | (제3영업일) | 제4영업일 |
|---------------------|---------|---------|-------------------|-------------------|
| 17시[오후5시] 이전에 납입시 | 환매청구일 | | 기준가격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
|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납입시 | 환매청구일 | | | 기준가격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주1)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의 기준시간(17시[오후5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처리합니다.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금액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환매수수료는 6개월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입니다.

□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탁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분환매

- (1)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마.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에서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3)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가.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 (1) 수익자는 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2) 수익자는 (1)에서 받은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 (1)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 및 유동성자산, 파생상품등에의 투자비율을 조절하여 투자·운용합니다.
 - 국공채(정부보증채 포함), 은행채, 우량 회사채(A-)등의 안정자산에 집중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합니다.
- (2) Short - Term Duration Bet / Relative Value Trading
 - 적절한 Duration Bet / 상대적 안정성이 높은 Yield Curve Bet 중심으로 합니다.
 - 저평가 종목을 편입하고 고평가 종목을 매도하는 교체매매 전략 지속 수행합니다.
 - 선물/스왑간 가격왜곡을 이용한 스프레드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향상 도모합니다.

2.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투자대상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내역 |
|---|--------|--|
| ① 채권 | 60% 이상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사채권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다만, 주식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을 제외) |
| ② 자산유동화 증권 | 40% 이하 |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③ 어음 | 40% 이하 | ○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채무증서 ○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 ④ 금리 스왑거래 |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
| ⑤ 파생상품 | 15% 이하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
| | |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
| 수익증권등 |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하 |
| 투자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
|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 <p>▶ 투자비율 적용 제외</p>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 ④, ⑤(가.의 경우에만 적용)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 |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제외 |
|------|--|-------|
| 단기대출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77조 적용)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 | |
|---|--|---------------|
| 사모사채에 투자 | 자산총액의 2%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행위 | |
| 동일종목 투자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 | |
|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
| ▶ 상기 투자제한 적용 유예(적용제외에 규정된 경우 제외)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 |
|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II.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산정 및 공시

1. 자산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등 발표하는 가격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 | |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
| 장외파생상품 |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2.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
| 기준가격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 (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 (www.hanabank.com)·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 |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투자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 평가 항목

중개거래 시장점유율, 거래관련 자격보유여부,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 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3층
 (02-3774-7600)

회 사 연 력

| 일자 | 연혁 |
|------------|--|
| 1998. 9.15 | 설립등기 (납입자본금 300억원) |
| 10. 1 | 삼성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영업권 양수 (수탁고 8조) |
| 11. 2 | 영업 개시 |
| 12. 4 | 삼성그룹 계열사 편입 (공정거래위원회) |
| 1999.12.29 | 수탁고 10조 달성 구. 삼성투자신탁운용과 합병 (납입자본금 632억, 관리자산 20조) |
| 2000. 3. 3 | 자본금 300억 유상증자 (납입자본금 932억) |
| 3.30 | 회사상호 변경 등기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 → 삼성투자신탁 운용) |
| 2001. 1. 9 | 업계 수탁고 1위 달성 |
| 11. 5 | 연기금 투자폴 주간 운용사 선정 |
| 2002.10.14 | 국내 최초 상장지수투자신탁 KODEX200 증권거래소 상장 |

2. 주요업무

- ①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의 책임이 자산운용회사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항 목 | 대차대조표 | | 항 목 | 손익계산서 | |
|-------------|----------------|----------------|--------------|---------------|---------------|
| | '06.3.31 | '05.3.31 | | '06.3.31 | '05.3.31 |
| 유동자산 | 117,291 | 100,850 | 영업수익 | 64,794 | 57,404 |
| 고정자산 | 37,797 | 38,264 | 영업비용 | 33,536 | 32,512 |
| 자산총계 | 155,088 | 139,115 | 영업이익 | 31,258 | 24,892 |
| 유동부채 | 7,437 | 5,667 | 영업외수익 | 128 | 989 |
| 고정부채 | 2,301 | 1,381 | 영업외비용 | 25 | 28 |
| 부채총계 | 9,738 | 7,047 | 경상이익 | 31,361 | 25,853 |
| 자본금 | 93,180 | 93,180 | 특별이익 | - | - |
| 이익잉여금 | 52,170 | 38,887 | 특별손실 | - | - |
| 자본조정 | - | - | 세전순이익 | 31,361 | 25,853 |
| 자본총계 | 145,350 | 132,067 | 당기순이익 | 22,601 | 17,946 |

4. 운용자산규모

(2006년 07월 31일 기준, 억좌)

| 종 류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파생상품 | 특별자산 | 재간접 | 실물자산 | 총 계 |
|-----|--------|--------|--------|--------|--------|------|-------|------|--------|
| 수탁고 | 24,507 | 17,554 | 44,522 | 57,941 | 14,809 | - | 8,200 | - | 16,533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및 기타운용 현황 (2010.1.26 기준)

| 성 명 | 나이 (년생) | 직 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비고 |
|-----|------------|-----|---------------------|----------------|---|-------------|
| | | |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 규모 | | |
| 유영재 | 1971 | 수석 | 11 개 | 4,413 억 | - 1996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96년 1월 ~ 2001년 3월 삼성화재 증권파트 - 2001년 3월 ~ 2004년 3월 삼성화재 특별계정파트 - 2004년 3월 ~ 現 삼성투신운용 채권2팀 - 2009년 2월 KDI대학원 자산운용경영학 석사 | 채권 2 팀에서 운용 |

* 신탁재산운용은 팀제로 운용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 가. 판매회사명 : 하나은행(주)
- 나.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 다. 설 립 일 : 1959년 12월
- 라. 총 자 산 : 92조원
- 마. 자본금 : 9,872억원

2.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수익증권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 수탁회사명 | 하나은행(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1588-1111) | |
| 회사연혁 | 1971. 6 | 한국투자금융(주) 설립 |
| | 1991. 7 | 은행으로 전환 |
| | 1998.10 | 충청하나은행 출범 |
| | 1999. 1 | 합병 하나은행 출범 |
| | 2002.12 | 서울은행과 통합 |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V.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채권평가회사의 개요

□ 채권평가회사명 및 주소 등

| 회사명 | 소재지 | 설립일 | 등록일 | 연락처 |
|-----|-----|-----|-----|-----|
|-----|-----|-----|-----|-----|

| | | | | |
|------------|-------------------------------------|-----------|-----------|------------------|
| KIS채권평가(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 2000.6.20 | 2000.6.30 | 02-3770- 0400 |
| 한국채권평가(주)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 2000.5.29 | 2000.7.1 | 02-399- 3350 |
| 나이스채권평가(주)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인빌딩 15층 | 2000.06. | 2000.06 | 02-739- 2545 |

□ 연 혁

KIS채권평가(주)

| 일 자 | 연 혁 |
|--------------|-------------------------|
| 2000. 06. 20 | 설립 |
| 2000. 06. 30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
| 2001. 01. 01 | 한경-KIS 채권지수 발표 |
| 2002. 07. 02 | 증권업협회-KIS-한경 기업어음지수 개발 |

한국채권평가(주)

| 일 자 | 연 혁 |
|--------------|-------------------------|
| 2000. 05. 29 | 설립 |
| 2000. 07. 01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
| 2002. 05. | 벤처기업 선정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

나이스채권평가(주)

| 일 자 | 연 혁 |
|----------|----------------------------|
| 2000. 06 | 설립 |
| 2000. 06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 |
| 2001. 10 | 나이스채권지수(NICE Bond Index)발표 |

2. 주요 업무내용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VI.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원이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의결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은 영업점포 내에 1월 이상 게시하고 자산운용회사(www.samsungfund.com)· 판매회사(www.hanabank.com)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게시, 개별통지, 신문광고 또는 컴퓨터통신을 통한 광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samsungfund.com)·판매회사(www.hanabank.com)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5)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명령,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수도
- (7)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 (8)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판매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